

『2025년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』 공고

1. 개 요

- (목적) 뿌리산업에서 代를 잇는 전통 확산을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명가(名家)로 선정
 - 명가기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,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함
- (근거)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

2. 자격요건 및 선정내용

가. 신청 자격

-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
 1.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
 2.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
 3.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,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

<동일성 유지기준>

- ①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(移轉)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(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을 영위할 것.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.
- ②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

나. 선정 혜택

- 명가 선정증, 현판수여, 뿌리기업 지원 사업 가점 및 뿌리산업 발전 유공 단체부분 추천 등의 기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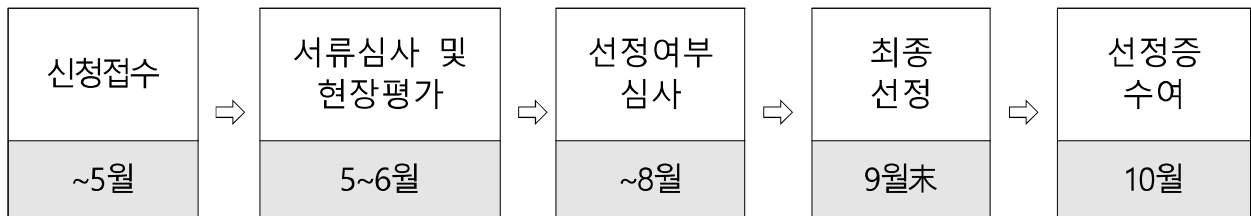
다. 제한 요건

-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업
- 최근 3년 이내 사망산재 발생, 임금체불 및 사업체 불법운영 등이 확인되는 기업

3. 평가 일정 및 기준

가. 평가 일정

- 「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」에 따른 진행

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심사 기준

□ 평가항목 (☞ 붙임1)

구 분	서면평가	현장평가	최종선정
평가항목	업력 / 기술 / 경영	현장실태조사	서면,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
대상	접수분 전부	서면평가 70점 이상 기업	서면 평가 70점 이상 기업 중 현장평가 적합기업 선정

4. 신청방법

가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5년 4월 14일(월) ~ 2025년 5월 9일(금) 18:00
- 신청양식 : 산업통상자원부(www.motie.go.kr)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(www.kpic.re.kr)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다운로드
- 신청방법 : 우편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 또는 방문접수
※ 접수 후 E-mail (shotgun@kitech.re.kr)로 자료 스캔본 송부 필수

송부서류	파일형태
신청서 및 공적조서	한글
추천서 및 기타증빙	PDF

접수처	주소	담당부서
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(우)0621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	뿌리산업진흥실 (02-2183-1636)

- 문의처
 -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(Tel : 02-2183-1636)
 - *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(Tel : 044-203-4907)

나. 제출서류(별첨1 참조)

- ① 뿌리기업 명가 신청서 및 기업추천서 3부
- ② 공적조서(포상 동의서 포함, 향후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단체부분 추천에 활용)
 - ※ 공적조서는 반드시 기업이 보유한 기술, 업력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, 단순 기술의 나열이 아닌 대표기술의 개요, 산업계 파급효과, 개발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 필요
- ③ 최근 3년 재무제표, 원천징수부 각 1부(원천징수부는 최근 3년 중 매해 12월 사항만 제출)
- ④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- ⑤ 연구소 및 연구전담기구 증빙서류
- ⑥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(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기업체 사항 제출)
- ⑦ 회계법인의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(상장회사에 한정)
- ⑧ 기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
 - ※ 지식재산권, 수상경력증명서, 납품(수출)실적 증빙서, 상벌사항, 7년 이상 재직자 명단 등

※ 참고사항

-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
-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
- 뿌리산업 발전 유공자(단체부문)로 추천되는 기업의 경우 「상훈법」,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, 「산업통상지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 준하여 운용

구 분		평 가지 표	
영 력 평 가 (40)	가업승계(20)	○ 가업승계를 받은 경영자의 근무 년 수	
	업력 (15)	○ 기업 경력 - (업종 변경 된 경우) 변경 시점부터 계산 - (업종 추가 된 경우) 추가된 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49% 이하의 경우만 인정	
	발전가능성 (3)	○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	
	파급효과 (2)	○ 추천서에 기재된 기업의 청렴도, 평판도 및 관련 산업기여도	
기 술 평 가 (30)	기술 혁신성 (5)	○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○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	
	기술 사업성 (5)	항목 지수	○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- 국내외 공인규격 : KS, UL, JIS, ISO관련 등 -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(CC, GQ 등)
		가산 점수	○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
	기술 우수성 (15)	항목 지수	○ 벤처기업, INNO-BIZ기업 또는 녹색인증기업, 환경인증마크(E, ECO) 해당여부
			○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(벤처기업대상, 우량기업) ○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) 실적 ○ 기업 보유기술의 산업계 보급 확산 가능성 ○ 기업 대표기술의 산업파급성 및 국가핵심기술 연계성 여부
가산 점수	○ IR52장영실상, 지식경제부 10대 신기술상, NET, NEP 해당 여부		
기술 집약성 (5)	○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&D(기술개발) 투자비율 ○ 직전년도(기술개발) 투자 증가율		
경 영 평 가 (30)	재 무 상 태 (15)	안정성	○ 직전년도 부채비율 ○ 직전년도 유동비율
		성장성	○ 당기/전기 매출증가율 ○ 당기/전기 총자산증가율
		수익성	○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○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
	수출액 규모(5)	○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 (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)	
	일자리 기여도(5)	○ 상시 근로자수(전년도 말)	
	동일기업 근속자 비율(5)	○ 상시 근로자중 7년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(전년도 말 기준, 전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)	
가점(3)	○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기업의 경우 가산점		
현 장 평 가 (100)	기술 (50)	○ 기술혁신 능력 ○ 기술사업화 능력 ○ 기술의 우수성 ○ 기술의 집약성 ○ 기술의 마케팅 능력	
	경영 (50)	○ 핵심역량 개발 및 유지 ○ 조직 활성화 ○ 윤리적 경영 ○ 인적자원 개발 ○ 비전 전략적 방향 제시	